



수신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신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권오인 팀장, 최예지 간사 / 02-3673-2143)
일자	2017. 1. 12 (목)
제목	[보도자료] 권력형 부패의 산물,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촉구 기자회견 (총14매)

[권력형 부패의 산물,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촉구 기자회견] “미르·K스포츠 재단 해산시키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라”

- 2017년 1월 12일 (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1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순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사무총장
 - 미르·K스포츠 재단 운영 실태 현황 : 최예지 간사
 - 해산 절차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 정미화 변호사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 경실련의 입장 (기자회견문) : 양혁승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질의응답

<기자회견 취지>

미르·K스포츠재단은 불법모금으로 설립된, 시작부터 공익에 해를 끼치는 재단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설립허가 신청 하루만에 승인허가 등 행정적 특혜와 대통령 해외순방 시 태권도 시범단, K-meal 등 사업 특혜를 제공받은 재단입니다. 현재,

두 재단 출연금의 뇌물죄 적용여부는 수사중이지만, 현재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느 곳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 재단의 재산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재단 운영비로 사용될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인 경우 박근혜 및 최순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이사장과 이사로 재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사나 행정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만 유일하게 사업보고서와 결산보고서 등에 대한 의무 보고 규칙을 삭제하여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모금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을 방치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익을 훼손하면서 불법모금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을 해산하고 두 재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산물인 미르·K스포츠재단을 당장 청산해야한다.

청와대와 전경련이 공모하여 재벌로부터 불법적으로 모금한 수백억 원을 가지고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은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산물이기에 당장 해산되어야 한다. 언론취재와 검찰 수사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기획한 후 직접 재벌총수들을 만나 자금출연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전경련은 두 재단의 설립을 주도지원하고 재벌들로부터 774억 원을 징구하였다. 재벌들은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경영권 승계와 사업권 특혜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권력과 재벌의 불법적인 거래로 설립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관리·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들 두 재단은 기금 중 80%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재산으로 배정한 기형적 자금관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사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운영재산을 빼돌릴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현재도 매달 약 1.8억 원의 자금을 재단의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산물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해산절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장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적으로 모금한 출연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라.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이미 검찰수사에서 재벌들의 설립자금 출연과 권력자의 특혜적 민원 해결을 맞교환한 불법적 거래의 산물로 설립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민법> 제38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형법상의 판결 결과만 기다리며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민법이 정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

혀진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단법인의 기능 정지를 위해 민법 38조에 따라 당장 감사를 실시하고 재단의 해산을 위한 행정적 조치에 착수해야하며, 불법 출연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둘째, 미르.K스포츠재단은 해산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

미르.K스포츠재단은 불법적으로 모금한 774억 원을 쌓아두고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로 매달 2억원을 쓰고 있다. 또한 국제농업협력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회가 마음먹고 결의하기만 하면 주무관청의 감독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620억원의 자금을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다. 특히, K스포츠 재단은 직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국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만큼 재단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두 재단은 해산 전이라도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의 진정한 목적은 문화 사업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고 기업에 강제 할당하여 모금하여 설립한 것으로 헌법 및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 재단은 권력 부패의 결과물이므로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두 재단의 재산이 계속해서 급여, 임대료 등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국가예산까지 지원되고 있다. 경실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당장 두 재단의 해산 절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르·K스포츠재단의 운영실태 분석

1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일지

날짜	내용
2015.07.	박근혜 대통령 재벌총수 독대(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 의혹)
2015.10.27.	미르재단 설립허가 신청(하루만에 승인)
2016.01.13.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신청(하루만에 승인)
2016.07.26.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의혹 언론보도
2016.09.02.	미르재단 의혹 언론보도 후 이사장 및 이사 교체
2016.09.20.	미르·K스포츠재단의 최순실 관여 의혹 언론보도
2016.09.22.	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허가취소 검토' 관련 언론보도 반박
2016.09.26.~ (국정감사)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K타워 사업 특혜 의혹 K스포츠재단 소속 태권도시범단 대통령 순방 동행 특혜 의혹
2016.09.30.	전경련,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후 통합재단 설립 계획 발표
2016.11.30.	조운선 장관, 국조특위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재산 동결 요청 공문 발송' 공개
2016.12.06.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재벌총수들 국회청문회 출석
2016.12.27.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두 재단 통합 후 박근혜 재단될 계획' 폭로
2017.01.05.	K스포츠재단 이사회 정동춘 이사장 연임안 부결했으나 사퇴거부 문화체육관광부, 재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2 미르·K스포츠재단 개요

2.1. 미르재단의 개요

1 미르재단 허가 개요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단법인 미르 법인설립 허가

1.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2015.10.26.) 관련입니다.
2.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허가내역

- 법인명칭 : 재단법인 미르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길 21 3층
- 대표자 : 김형수
- 설립목적
 -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추진, 문화콘텐츠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한류의 해외진출 기반조성, 전통문화 가치 확산 등
- 주요사업
 - 글로벌 문화교류 행사, 문화 ODA 사업 추진
 - 문화 창조기업 육성 및 해외 동반 지출 지원
 - 전통문화 가치 발굴 프로젝트 추진, 우수전통문화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

나. 허가조건

-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할 것
- 법인의 목적 및 사업 등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 제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주사무소, 지부/지회 및 기본재산을 등기할 것
-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을 법인 명의로 변경할 것
- 법인 설립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 설립허가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상기 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2 미르재단 <발기인> 및 <기업 출연금>

	이름	직함	출연금(원)	비고
1	김형수	연세대 교수		
2	권오현	삼성전자 (주) 대표이사	6,000,000,000	
3	윤부근	삼성전자 (주) 대표이사		
4	신종균	삼성전자 (주) 대표이사		
5	안민수	삼성화재해상보험(주)대표이사		2,500,000,000
6	김창수	삼성생명보험 (주) 대표이사	2,500,000,000	
7	김봉영	삼성물산 (주) 대표이사	1,500,000,000	
8	윤주화	삼성물산 (주) 대표이사		
9	최치훈	삼성물산 (주) 대표이사		
10	김 신	삼성물산 (주) 대표이사		
11	김충호	현대자동차 (주) 대표이사	4,600,000,000	
12	박성욱	SK하이닉스 (주) 대표이사	6,800,000,000	
13	하현희	(주)LG 대표이사	4,800,000,000	(주)엘지화학 3,800,000,000 엘지디스플레이(주)1,000,000,000
14	이홍균	(주)호텔롯데 대표이사	2,800,000,000	(주)호텔롯데 면세점 2,800,000,000
15	정택근	(주)GS 대표이사	2,600,000,000	(주)지에스이앤알 200,000,000 지에스이피에스(주)360,000,000 (주)지에스리테일230,000,000 (주)지에스홈쇼핑100,000,000 지에스건설(주)590,000,000 (주)지에스글로벌210,000,000 지에스칼텍스(주)630,000,000 GS파워280,000,000
16	최양수	(주)한화 대표이사	1,500,000,000	
17	황창규	(주)KT 대표이사	1,100,000,000	
18	이광우	(주)LS 대표이사	1,000,000,000	
19	지창훈	(주)대한항공	1,000,000,000	
20	김성수	CJ E&M (주)	800,000,000	
21	김수천	아시아나항공(주) 대표이사	300,000,000	금호타이어 400,000,000 아시아나항공(주)300,000,000
22	이재경	(주)두산 대표이사	700,000,000	
23	김동수	대림산업(주) 대표이사	600,000,000	
24	심상배	(주)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200,000,000	
25	권오준	(주)포스코 대표이사	3,000,000,000	

③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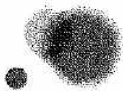
○ 법인 해산 : <재단법인 미르 정관> 제35조 (해산), “①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산의 경우 청산인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잔여재산의 귀속 : <재단법인 미르 정관> 제3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

2.2. K스포츠재단의 개요

① K스포츠재단 허가 개요

함께하는 문화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이사장

(경유)

제목 재단법인 설립 허가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경련사회공헌팀2016-14(2016.01.12.) 관련입니다.
3. 위 관련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재산의 법인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2016.2.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인명: 재단법인 케이스포츠(K-Sports Foundation)
- 설립목적: 체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체육으로 하나 되는 사회구현과 '국민행복은 국가발전'을 목표로 창조문화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이사장: 정동구(한국체대 명예교수)
- 주요사업
 - 체육인재를 발굴하여 국가대표선수로 양성 및 지원
 - 남북체육교류사업을 통한 평화기반 마련
 - 국제체육교류사업을 통한 한국 스포츠 위상 강화
 -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 체육행사를 통한 국민의 행복 실현 등

나. 재산현황: 기본재산 53.8억 원, 보통(운영)재산 215.2억 원

다. 허가일자: 2016.1.13.

② K스포츠재단 <발기인> 및 <기업 출연금>

	이름	직함	출연금	비고
1	정동구	한국체육대학교 명예교수		
2	김창수	삼성생명보험 (주) 대표이사	3,000,000,000	
3	안민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대표이사	2,900,000,000	
4	임대기	(주) 제일기획 대표이사	1,000,000,000	
5	육현표	(주) 에스원 대표이사	1,000,000,000	
6	김충호	현대자동차 (주) 대표이사	2,280,000,000	
7	장동현	SK텔레콤 (주) 대표이사	2,150,000,000	
8	김형건	SK종합화학 (주) 대표이사	2,150,000,000	
9	허수영	(주)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1,700,000,000	
10	정택근	(주) GS 대표이사	1,600,000,000	GS칼텍스 860,000,000 SoGS글로벌 40,000,000 지에스건설 190,000,000 지에스이앤 30,000,000 지에스이피에스 120,000,000 지에스파워 220,000,000 지에스홈쇼핑 140,000,000
11	차남규	(주) 한화생명보험 대표이사	1,000,000,000	
12	황창규	(주) KT 대표이사	700,000,000	
13	이광우	(주) LS 대표이사	600,000,000	LS니꼬동제련 239,400,000 LS엠트론 62,400,000 LS전선 99,600,000 가온전선 25,800,000 엘에스산전 121,200,000 에스코 51,600,000
14	김철하	CJ제일제당 (주) 대표이사	500,000,000	
15	이갑수	(주) 이마트 대표이사	350,000,000	
16	장재영	(주) 신세계 대표이사	150,000,000	
17	박지원	두산중공업 (주) 대표이사	400,000,000	
18	이중근	(주) 부영주택 대표이사	300,000,000	
19	서경배	(주)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100,000,000	

③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규정

- 법인 해산 :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정관> 제34조 (해산), “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인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잔여 재산의 귀속 :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정관> 제 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

3.1. 관리감독이 필요없는 운영재산이 80%인 기형적 구조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액 774억 원 중 620억(80%)은 운영재산으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미르재단은 2015년 486억을 모금하여 기본재산으로 100억원만登記하고, 운영재산으로 386억원을 편입했음.
 - K스포츠재단은 2016년 288억을 모금하여 기본재산으로 53억 8천만원을登記하고, 운영재산으로 234억2천만원을 편입했음.
 - 미르·K스포츠재단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총 620억 원임
- 특히, 전체 출연금의 20%만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80%를 일반적인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구조는 일반적 재단법인과 다른 기형적인 예산구조
 - 이런 기형적인 예산구조는 검찰 수사 결과 안중범 전 수석의 지시로 밝혀짐

〈표1〉 미르·K스포츠재단 재산 현황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합계
기본재산	100억 원 (20.6%)	53억 8천만 원 (19.0%)	154억 원 (19.9%)
운영재산	386억 원 (79.4%)	234억 2천만 원 (81.0%)	620억 원 (79.9%)
합계	486억 원 (100%)	288억 원 (100%)	774억 원 (100%)

주) 기본재산 : 처분 또는 증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변경 해야 효력 있음

· 운영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

자료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

3.2.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과 연관된 인사들로 이사회 구성

-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회는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및 그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음

<표2>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회 구성 현황 (2017.1.10.기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름	직업	관계 의혹	이름	직업	관계 의혹
이사장	김익준	전 롯데호텔그룹 대표		정동춘	운동기능회복센터 원장	최순실 단골 마사지 샵 원장
이사	강명신	전 문화창조융합센터장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위원	김필수	대전대 교수	
이사	배선용	대림산업 경영지원본부 상무		주종미	호서대 교수	
이사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	전경련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	전경련
				신동진	파악 안팀	

주1. 미르 재단 : 2016년 9월 2일 작성된 '2016년 제5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 K스포츠 재단
 주2. K스포츠 재단 : 2017년 1월 9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공개된 회의록

○ 미르재단, <강명신> 전 문화창조융합센터장

- 문화창조융합센터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수행하기 위해 CJ그룹이 만든 단체이며, 이를 두고 CJ그룹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의혹이 많았음
- 강명신 센터장은 대통령직속 정책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아시아문화원의 비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미르재단 이사진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 CF감독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

- 정동춘 이사장은 최순실의 단골마사지샵의 원장으로 알려져 있음
- 정동춘 이사장은 현재 고급 자동차를 제공받고 있으며, 출연금 157억원 중 100억원정도가 정동춘 이사장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
-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노승일 부장의 해고를 시도하고 징계를 내리는 등 K스포츠재단의 부적절한 운영을 지속하였음
- 현 이사회에서 정동춘 이사장을 해임 했음에도 고소를 하며,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려고 하지 않음

3.3. 재단운영비 지출 분석 : 미르·K스포츠재단 월 평균 1억8천만원 지출

① 미르재단 : 2016년 지출내역- 매월 평균 9,200만원을 지출함

<표3> 미르재단 2016년 월별 지출내역 (단위 : 원)

	급여	4대보험	세금	임대료	전기료	자문료	합계
1월	30,754,190		11,542,580	7,150,000	432,300	8,027,250	57,906,320
2월	86,552,200	9,401,780	6,851,530	7,150,000	509,300	7,656,000	118,120,810
3월	64,465,950	10,280,360	1,292,830	7,150,000	548,900	6,503,750	90,241,790
4월	57,119,470	11,395,920	6,825,200	7,150,000	402,600	6,908,000	89,801,190
5월	53,205,470	10,920,790	7,108,460	7,150,000	314,600	6,503,750	85,203,070
6월	57,113,350	11,412,930	7,622,020	7,150,000	284,900	14,866,500	98,449,700
7월	63,093,660	10,751,980	4,142,610	7,150,000	380,600	5,079,250	90,598,100
8월	49,038,230	9,405,580	5,702,740	7,150,000	463,100	4,675,000	76,434,650
9월	81,305,740	10,156,180	8,654,060	7,150,000	564,300	4,351,600	112,181,880
10월	56,316,800	10,156,180	5,781,970	7,150,000	432,300	3,132,250	82,969,500
11월	54,027,070	13,729,840	16,992,750	7,150,000	356,400	550,000	92,806,060
12월	48,459,870	10,790,410	8,889,960	7,150,000	425,700		75,715,940
합계	701,452,000	118,401,950	91,406,710	85,800,000	5,115,000	68,253,350	1,070,429,010

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만 추산하였음
 자료: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

- 이 비용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만을 계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사무실 보안경비 시스템, 청소용역비, 통신비, 직원 복리후생비 등 기초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임(※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자료 제공)

2] K스포츠 재단 : 2016년 지출내역- 매월 평균 8,500만원 지출함

표4. K스포츠 재단 2016년 월별 지출 내역

	급여	4대보험	세금	임대료	전기료	자문료	합계
1월	33,591,966			6,557,320			40,149,286
2월	42,024,483	9,401,780	17,064,700	9,680,000	127,248	8,030,000	86,328,211
3월	38,299,446	2,527,550	3,262,470	9,680,000	1,690,598	330,000	55,790,064
4월	83,474,001	6,194,770	7,881,837	9,680,000	648,120	330,000	108,208,728
5월	70,196,589	6,313,180	6,144,300	9,680,000	438,930	330,000	93,102,999
6월	57,401,949	6,483,890	3,630,100	9,680,000	397,590	330,000	77,923,529
7월	60,420,811	15,996,310	6,859,940	9,680,000	508,420	330,000	93,795,481
8월	65,959,711	11,753,270	1,722,960	9,680,000	558,470	330,000	90,004,411
9월	73,745,242	10,976,420	5,088,480	9,680,000	644,270	5,330,000	105,464,412
합계	525,114,198	69,647,170	51,654,787	83,997,320	5,013,646	15,340,000	750,767,121

주: 고정 지출비용 추산
 자료: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

- K스포츠 재단의 경우 월 차량 렌트비, 이사회 교통비 지급, 특히 직원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의 규모까지 산정하면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됨

4 관리감독 및 사업

4.1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의무 규칙 삭제

-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는 각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음
 - 이 규칙에서 설립허가, 정관변경, 법인사무 검사 감독, 설립허가 취소, 해산 신고 등 비영리 법인에 관한 설립과 감독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비영리 법인의 관리감독을 위해, 각 규칙에는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등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음
-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일하게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보고의무가 없음
 - 미르·K스포츠재단은 사업 계획과 실적에 대해 어느 곳에도 하지 않고 있음

표5. 비영리 법인 감독에 관한 규칙 비교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7조 삭제 <2005.6.4.>

- 문화체육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이므로 세부적 사업계획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계획과 실적 보고도 받고 있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리감독의 기본적 제도조차 없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불법적 모금과 사업이 가능하였음

4.2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

(1) 국제농업협력(ODA) - 아프리카 영양강화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지원 사업

- 국제농업협력사업 중 '농업기술지원사업'은 미르재단의 참여로 논란이 된 '케이밀(K-Meal)' 사업을 발전시킨 것임
 - 해당 사업의 총 예산 192억 9300만원 중 문제가 된 아프리카 3개국(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 농업기술지원사업 예산은 25억5000만원이었으나 20억원 삭감하여 5억원이 남아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사업과 미르재단은 관련없고, ODA사업의 신뢰성을 위해서 전액 삭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이 사업은 미르재단의 '케이밀(K-Meal)' 사업과 상관성이 높고 사업계획 등이 불충분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 등을 참고하여 남은 예산 사업을 중지해야 함